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다. 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라.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마.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
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을 말한다.

제31조제4항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제31조의4 및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12제2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26부터 제44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6(곰 사육 가능 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제44조의28(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요건: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이 규칙 제23조의7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곰 보호시설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40호의17서식 및 별지 제40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u>법 제23조제6항</u>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u>법 제23조제7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u>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을 말한다.</u>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법 제23조제5항</u>----- ----- ----- ----- ----- -----.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 <u>법 제23조제6항</u>----- ----- -----.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1조의4 (생략)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③ ~ ⑥ (생략)

<신설>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

-- 법 제23조의3제3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 (현행 제31조의4와 같음)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23조의3제3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6(곰 사육 가능 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

<신 설>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신 설>

립생태원

3. 그 밖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제44조의28(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요건: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이 규칙 제23조의7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추는 것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곰 보호시설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

	<u>시설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u>
--	--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① 기 관 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⑤ 보유 사육곰 목록					
개체번호	보통명(학명)	성별	⑥원산지	출생(수입)일	비고

⑥ 사육시설 및 사육관리	시설규모 (동, 면적(㎡))		
	일반사육관리	[] 물과 음식 제공 [] 적당한 환경 제공 [] 동물 건강관리 [] 행동 관리 []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 행정	
	탈출방지방안		
	폐사처리방안		
	기 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8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시설요건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7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④소재지란에는 사육곰 보호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 ⑤사육곰 목록란에 적을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⑥원산지에는 수입곰일 경우 '수입곰'으로, 자체증식개체인 경우 '자체증식개체(한국)'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지정번호 제 호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			
상호(성명)			
연락처			
보호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동, 면적(㎡))			
사육하는 사육곰 목록 및 시설내역			
학 명	보통명	수량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8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